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경제지원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경제지원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차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지역상품 “우선구매” 를 지역상품 “구매촉진” 으로 변경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명,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인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6조제1항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안 제8조제1항, 제2항의 “지역 상품” 문구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 5. 1일부터 5.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5. 6. 25.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 정비를 통해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 5070
----------	--------------

제출년월일: 2025. 7. 4.
제출자: 달서구청장
(경제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 차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차별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 정비(제명,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2) 「중소기업기본법」
- 3)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5. 5. 1.~5. 21.)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붙임 1】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상품을 우선 구매함” 을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 으로 한다.

제4조 중 “우선구매” 를 “구매촉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 상품 우선구매” 를 “지역상품 구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 상품” 을 “지역상품”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 를 “(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 상품” 을 “지역상품” 으로, “우선구매” 를 “구매촉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을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u> <u>우선구매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u>상품을 우선 구매함</u>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u>우선구매에</u>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구매촉진)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지역 상품</u>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그 밖에 <u>지역 상품</u> 구매촉진을</p>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u> <u>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상품의 구매를 촉진함</u>-----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u>구매촉진</u>----- ----- ----- -----.</p> <p>제6조(구매촉진) ① ----- ----- ----- <u>지역상품 구매</u>----- ----- -----.</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지역상품</u> -----</p>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

① -----지역상품-----
-----구매
촉진-----.

② -----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
-----.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 기관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

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

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